휴 직 [복 직] 확 인 서

성 명		회 원 번 호	
사 유			
휴 직 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	
복 직 일 자	년 월 일		

※ 휴직(복직) 일자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부담금 고지에 반영됩니다.

※ 본회 정관 제 34 조(부담금 납입의 특례)에 의거 휴직기간에는 장기저축급여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장기저축급여 부담금 납입을 원하시면 개별 납입하시거나 자동이체를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.

※ 휴직시에도 대여상환금은 납부하여야 하며, 미납시에는 연체료가 발생합니다.

위와 같이 우리 분회의 소속회원이 휴직(복직)을 하게 되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분회장 [직인]

※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(1577-3400)로 문의주시고, 확인서는 FAX) 02-767-0199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The·K 한국교직원공제회

(서식개정일자 : 2018.4.10.)